

제12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구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안)
2. 구미시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동의 (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구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면적에 한해서 과세토록한 기준에 불구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 초과면적에 대하여도 분리 과세함으로써 종합토지세 누진 적용을 받지 않도록하여 감면혜택을 넓혀주는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단순용어를 삽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도 하며 모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호우피해자 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여름 우리 지역내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원상회복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호우피해자 실질 감면세액은 국세를 포함하여 총 73건에 6백3십6만5천원이나 대다수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조치로서 비과세 처리하였고 호우로 황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복구시까지 종합토지세 4건 2만3천원과 유실 또는 폐차된 차량을 대체 취득시 동종, 동배기량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 6건 1백3십4만7천원을 감면해 주는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액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은 액수나마 법정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행여나 피해자중 감면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었거나 조사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시는 추가 상정심의키로 하고 금회 제출된 감면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